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가합30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30. 체결된 채권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3,949,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이다.
- 2) 피고는 D의 배우자로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취득

-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434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4. 'D는 E에게 338,720,944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23. 12. 11. E와 사이에 E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2023. 12. 28.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C으로부터의 양수금채권 취득

- 1) C은 2012년경 F으로부터 의정부시 G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경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C과 F은 2015. 5.경 C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37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F이 2015. 12. 30.까지 C에게 37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 C과 피고는 2015. 7. 30.경 C이 F에 대하여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5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7. 31.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후 피고는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41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5.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09호로 이송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7. 21. ‘F은 피고에게 3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2023. 12. 28.을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액을 산정하면 ‘1,011,569,217원 및 그중 338,720,944원에 대하여 202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다.

2) D는 공사업자로서 같은 공사업자인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C으로부터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으며, 양수인 명의만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으로 양수받은 채권을 다시 C에게 이전하여 D의 C에 대한 채권을 부활시키거나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D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2024. 1. 12.을 기준으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액을 계산하면 793,949,230원(= ① 원금 374,000,000원 + ② 2016. 5.

12.부터 2016. 7. 21.까지의 이자 358,630원 + ③ 2016. 7. 22.부터 2023. 12. 28.까지의 이자 419,590,60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793,94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2)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D 대신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원고가 양수받은 E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송사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일은 2015. 7. 30.이고, 이 사건 소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영, 판사 정우채, 판사 이덕균